

「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10월 2일

나. 발 의 자: 김영길 의원(1인)

다. 찬 성 자: 김영태, 김재우, 김정도, 박세채, 이명희,
이상호, 이정희, 추은희 의원(8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2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10월 16일

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영 길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민의 비만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 근거를 마련하고, 이를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: 구미시민 비만예방 실천계획 수립 근거 마련(안 제6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, 제6조, 제12조, 제19조
- 기 타: 조례안 예고(2025. 10. 2. ~ 10. 10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- 비만 개념 정의를 보완하고, 비만예방 실천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비만의 개념을 보다 의학적으로 명확히 하고,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정책 적용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조례 개정이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 목표와 추진과제, 재원 확보 방안, 세부 실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비만예방 실천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.
- 아울러 비만예방 사업이 실질적인 시민 체감 효과로 이어지도록, 교육·홍보 중심의 캠페인뿐 아니라 건강친화 급식, 걷기 좋은 환경 조성, 걷기 챌린지 등 생활환경 개선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

- 현 개정안으로는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려움. 매년 실천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·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비만예방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